

송파 위례 리슈빌 FIRST CLASS A1-6BL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4.1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반 및 특별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의 청약 접수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아파트유 www.apt2you.com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부적격 시 당첨자 선정 제한 1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송파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입니다.**
 - 투기지역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시 및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2018.12.28. 지정)
 -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 인천(일부) · 경기도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일부)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분당구 · 광명시 · 하남시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광명시 · 구리시 · 안양시 동안구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용인시 수지구 · 용인시 기흥구 · 광교택지 개발지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수원시 팔달구 부산 해운대구 · 동래구 · 수영구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가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에서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8.04.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본 아파트는 전세대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 요건
 - 미성년자의 경우 자녀 양육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주택공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2019년 2월 1일 시행되어 제23조 제2항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 · 계약시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본인과 세대원 포함),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 전용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6조2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 수에 80퍼센트의 예비입주자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가점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8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 한다)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유지되며,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며, 제26조 2에 의거 특별공급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 부여는 추첨으로 하고, 특별공급의 당첨 취소 물량 등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예비입주자 포함)의 입주자 발표일은 일반공급 입주자 당첨발표일과 같은 날 동·호수를 포함하여 발표되며,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개편으로 인한 예외사항 외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해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본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과거 5년 이내의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각목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및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의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및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재개발/재건축) 및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인가일부 5년간 해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본 아파트의 당첨 또는 계약체결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조합원 분양신청 불가/현금청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계획승인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해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해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 이전기관중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토지임대주택 - 당첨일로부터 5년
 -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본 주택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 서비스(www.ap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당첨 사실 조회 및 청약 제한사항을 미리 확인하시어 부적격 당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 1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모든 지역 2순위 접수방법 변경** : 청약 신청금 → 청약통장으로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가점제 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또한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 1순위 신청 시 입주자 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수도권 거주자로 신청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4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특별공급 주택 전매 제한 강화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1항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합니다.
- 서울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제한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9억원 이하의 세대에 한하여 (공급금액의 40% 범위 내 : 중도금 1회 ~ 4회차, 5, 6회차 직접 납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을 알선만 하며, 대출이자는 수분양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중도금을 해당일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기 바라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기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또한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2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1호 :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1.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판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시행일("18.12.11) 이전 공급계약된 건
 - 나.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 시행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 라.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판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 2.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서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2019년 2월 1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 일정**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4월 23일(화)	4월 24일(수)	4월 25일(목)	5월 3일(금)	5월 15일(수) ~ 5월 17일(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송파구 주거사업과 - 호(2019.04.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A1-6 ब्ल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10~25층, 총 8개동, 총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약식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 세대 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다자녀	노부모	합계			
민영 주택	2019-000362	01	105.4624	105	105.4624	26.6332	132.0956	73.9086	206.0042	63.4671	188	23	6	29	159	4
	2019-000362	02	111.5354	111	111.5354	26.9367	138.4721	78.1646	216.6367	67.1218	169	-	-	-	169	2
	2019-000362	03	114.8829	114	114.8829	27.4746	142.3575	80.5105	222.8680	69.1363	42	-	-	-	42	-
	2019-000362	04	116.6104A	116A	116.6104	27.7522	144.3626	81.7212	226.0838	70.1759	60	-	-	-	60	-
	2019-000362	05	116.4554B	116B	116.4554	27.7273	144.1827	81.6125	225.7952	70.0826	11	-	-	-	11	-
	2019-000362	06	105.4624T	105T	105.4624	26.6332	132.0956	73.9086	206.0042	63.4671	4	-	-	-	4	-
	2019-000362	07	111.5354T	111T	111.5354	26.9367	138.4721	78.1646	216.6367	67.1218	8	-	-	-	8	-
	2019-000362	08	118.0349T	118T	118.0349	29.0395	147.0744	82.7195	229.7939	71.0332	4	-	-	-	4	-
	2019-000362	09	130.6036T	130T	130.6036	30.3185	160.9221	91.5277	252.4498	78.5970	8	-	-	-	8	-
합계											494	23	6	29	465	6

※ 대지지분 면적 합산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면적은 소수점 5자리이하 절사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동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19-06-20	2019-10-20	2020-02-20	2020-06-20	2020-10-20	2021.02.20	2021.06.20			
105	188	101동 2호, 102동 2호, 103동 2호, 4호, 104동 2호, 4호, 107동 1호, 3호, 108동 1호, 3호	1층	4	472,134,296	353,765,704	825,90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82,590,000	165,180,000	
			2층	6	472,134,296	362,565,704	834,70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83,470,000	166,940,000
			3층	10	472,134,296	371,365,704	843,50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84,350,000	168,700,000
			4층	10	472,134,296	380,165,704	852,30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85,230,000	170,460,000
			5층	10	472,134,296	388,965,704	861,10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172,220,000
			6층이상	148	472,134,296	406,465,704	878,60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87,860,000
111	169	101동 1호, 3호, 102동 1호, 3호, 103동 1호, 3호, 104동 1호, 3호, 105동 1호 ~ 4호, 106동 1~2호, 107동 2호, 4호, 108동 2호, 4호	1층	2	499,321,755	366,278,245	865,60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86,560,000	173,120,000	
			2층	10	499,321,755	375,478,245	874,80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87,480,000	174,960,000
			3층	18	499,321,755	384,678,245	884,0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88,400,000	176,800,000
			4층	9	499,321,755	393,878,245	893,20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89,320,000	178,640,000
			5층	8	499,321,755	403,078,245	902,4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480,000
			6층이상	122	499,321,755	421,578,245	920,90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92,090,000	184,180,000
114	42	103동 3호, 104동 3호, 105동 1호, 2호, 107동 2호, 108동 2호	4층	2	514,307,701	403,392,299	917,70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91,770,000	183,540,000	
			5층	3	514,307,701	412,792,299	927,10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92,710,000	185,420,000	
			6층이상	37	514,307,701	431,692,299	946,0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189,200,000
116A	60	101동 1호,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107동 4호, 108동 4호	4층	5	522,041,327	408,558,673	930,60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93,060,000	186,120,000	
			5층	6	522,041,327	418,158,673	940,20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94,020,000	188,040,000	
			6층이상	49	522,041,327	437,358,673	959,40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95,940,000	191,880,000
116B	11	105동 1호, 2호, 106동 2호	4층	2	521,347,265	408,052,735	929,40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92,940,000	185,880,000	
			5층	1	521,347,265	417,652,735	939,0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93,900,000	187,800,000	
			6층이상	8	521,347,265	436,852,735	958,20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95,820,000	191,640,000
105T	4	104동 2호, 4호, 107동 2호, 4호	2층	4	472,134,296	388,965,704	861,10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86,110,000	172,220,000	
111T	8	104동 3호, 105동 1호 ~ 4호, 106동 1호 ~ 2호, 107동 2호	2층	8	499,321,755	403,078,245	902,40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90,240,000	180,480,000	
118T	4	104동 2호, 4호, 107동 2호, 4호	1층	4	528,418,816	419,681,184	948,10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94,810,000	189,620,000	
130T	8	104동 3호, 105동 1호 ~ 4호, 106동 1호 ~ 2호, 107동 2호	1층	8	584,686,227	452,213,773	1,036,90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103,690,000	207,380,000	

※ 상기 건축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송파구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음.(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합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급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대금(2차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9억원 이하의 세대에 한하여 (공급금액의 40% 범위 내 : 중도금 1회 ~ 4회차, 5, 6회차 직접 납부) 사업주체가 금융기관을 알선만 하며, 대출이자자는 수분양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중도금을 해당일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기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직접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 X 0.3025 또는 공급면적(m) ÷ 3.3058)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칭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105	111	114	116A	116B	105T	111T	118T	130T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50%)	12	-	-	-	-	-	-	-	-	12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서울시 1년미만 거주자 (50%)	11	-	-	-	-	-	-	-	-	11
	소계	23	-	-	-	-	-	-	-	-	23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50%)	3	-	-	-	-	-	-	-	-	3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서울시 1년미만 거주자(50%)	3	-	-	-	-	-	-	-	-	3
	소계	6	-	-	-	-	-	-	-	-	6
합계		29	-	-	-	-	-	-	-	-	2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신혼부부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 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 특별공급 제외 주택)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인터넷 청약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접수일에 APT2you 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 견본주택 현장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서류 부족 및 서류 접수 중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접수 불가함. • 청약 접수 가능 시간 :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APT2you 홈페이지 08:00~17:30), 단, 정보 취약 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 접수 가능 (송파 위례 리슈빌 FIRST CLASS 견본주택 10:00~14:00)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기간,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특별공급을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table border="1" data-bbox="212 1268 2161 1372">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재당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과밀억제권역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p>※ 청약 제한 사항(과거 당첨 사실 등)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p>
<p>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다자녀가구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p> <p>※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p> <p>※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10% 범위 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p>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p>※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원 중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별표1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세대수 : 전체 주택형별 건설량의 3% 범위 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순위 내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 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p>※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p> <p>-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p>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_별표1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1)+(2)+(3)+(4)+(5)+(6)		
(1)미성년 자녀수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2)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3)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가족	5	
(4)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당해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부터 해당 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인천·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p>특별공급 동·호수 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8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접수는 관련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하나, 현장접수 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 시간(아파트투유 www.aprt2you.com 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 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자격 증빙서류 대조,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음. - 현장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부적격 당첨, 당첨 취소)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별표3 제4호에 의거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4년간 전매가 금지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하며 동일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함.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함.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함. - 본 아파트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타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지위는 소멸되며 타 아파트의 당첨자 지위만 유지됨.(일반공급 예비입주자도 동일 적용)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 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p>신청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p>청약 신청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 제한 주택(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가목 및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중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기 분양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접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 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추첨제)이 분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중복 청약접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하며 동일세대에서 중복 청약하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함. 단,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개편으로 인해 청약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하며 또한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함.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 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총족(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제한됨. ※ 서울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서울시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서울시→하남시→서울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총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공급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는 제외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시(1년 이상) / 경기도·인천광역시 서울시(1년 미만)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청약제한 대상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순위	전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해당청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2순위 청약 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면적 변경없이 청약가능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함)</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미혼인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p>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분리 시 부양가족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 및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의 경우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2년 이상 ~ 3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되어 별도 확인 필요없음)
		3년 이상 ~ 4년 미만	5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5년 이상 ~ 6년 미만	7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5년 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함. • 가점제 당첨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른 최하층의 주택 배정 신청자는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음.)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8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은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8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유지됨.

IV. 청약 신청방법

■ 특별공급 청약 방법

구분	내용
신청 대상자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거주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신청 접수일	2019.04.23(화)
신청방법 및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특별공급 청약을 원칙으로 함. -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08:00 ~ 17:30 ※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방문 접수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자격요건과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특별공급 신청일, 마감시간(접수시간 : 10:00~14:00) 전에 견본주택으로 방문 접수하시기 바람.
인터넷청약 절차안내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 「APT청약신청」 ⇒ 「특별공급」 ⇒ 「주택명 선택 : 송파 위례 리슈빌 FIRST CLASS」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특별공급 종류 선택」 ⇒ 「특별공급 자격 확인」 ⇒ 「주택명 선택」 ⇒ 「거주지 입력」 ⇒ 「청약통장 자격 확인」 ⇒ 「특별공급별 선정 기준 입력」 ⇒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입력」 ⇒ 「청약 신청내역 확인」 ⇒ 청약 완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현장 접수 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시에는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인터넷 접수시 해당없음)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차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일반공급 청약 방법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 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 방법
일반공급	1순위	서울시(1년 이상) / 경기도·인천광역시 서울시(1년 미만)	2019.04.24(수) 08: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2019.04.25(목) 08:00 ~ 17:30	

※ 1순위 청약시 유의사항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서울시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1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 (타지역 청약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 접수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 가능함. (청약 신청 가능시간 08:00~17:3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소 은행 청약자)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 시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APT청약신청」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청약 시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스마트폰 청약 시 :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 ⇒ 「주택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 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 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창구 청약

- ※ 청약 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청약접수 가능 시간 09:00~16: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특별공급은 은행 창구 청약접수는 불가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현장 접수 가능)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table border="1"> <tr> <td>본인 신청 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td> </tr> <tr> <td>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td> </tr> </table>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 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 분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9. 05. 3.(금) • 확인 :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2you.com) 또는 APT2you 앱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 예비입주자 포함

-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시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로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동일 주택형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 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지위를 인정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소 은행 청약자)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 05. 3(금) ~ 2019. 05. 12(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APT2you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KB스타뱅킹 앱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조회」→ 「청약당첨사실 주택별조회」
전화(ARS)		서비스 종료	전화 1588-9999(서비스코드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 05. 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KB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KB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 ARS(국번없이 1369)를 통한 주택청약당첨조회 서비스가 2017.6.15.부터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기간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19. 05. 4(토) ~ 2019. 5. 10(금) 7일간, 10:00 ~ 16:00	• 송파 우레 리슈빌 FIRST CLASS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무주택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약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추첨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뢰기관명과 임신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VII.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9.05.15.(수)~05.17.(금), 3일간, 10:00 ~ 16:00	송파 위례 리슈빌 FIRST CLASS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 매매 계약(최소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함.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 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해당 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주택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의 모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관리계좌	KEB 하나은행	153-910013-62204	아시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해당 금융기관 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정상적인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공급대금 납부에 대하여 별도로 가상계좌를 안내 또는 고지할 경우에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가상계좌로부터 상기'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가상계좌는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1차 계약금 납부·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건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 계약체결 시 세대별 별도 생성되어 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분양금액이 9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금액의 40%(중도금 1회 ~ 4회 / 5, 6회차 직접납부) 범위 내 에서 사업주체에서 용자 알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 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알선만 하며, 대출이자는 수분양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이자를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와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며, 은행권 대출이 불가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함.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Ⅷ.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계약시		입주지정일	
105	16,480,000	3,296,000		13,184,000	
111	18,050,000	3,610,000		14,440,000	
114	18,050,000	3,610,000		14,440,000	
116A	18,260,000	3,652,000		14,608,000	
116B	17,930,000	3,586,000		14,344,000	
105T	16,970,000	3,394,000		13,576,000	
111T	18,890,000	3,778,000		15,112,000	
118T	16,640,000	3,328,000		13,312,000	
130T	20,050,000	4,010,000		16,040,000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입주시 관할관청에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및 확장면적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이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발코니 부분의 외부재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 확장부위는 경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수 있으며 인접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형 세대의 경우 일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중 새시 단열재 추가설치로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계약시 비확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결로, 결빙,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기본형(비확장)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제품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 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새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 선택 품목 (유상 옵션)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설치위치	제조사명 (실내기, 실외기)	총수량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비 고
						계약시	잔금납부시	
105	선택1	거실 (2EA) + 안방	삼성전자	3	5,020,000	1,004,000	4,016,000	
	선택2	거실 (2EA)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510,000	1,702,000	6,808,000	
111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180,000	1,036,000	4,14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40,000	1,728,000	6,912,000	
	선택3	거실 + 주방+ 안방 + 침실1 + 침실2		5	8,130,000	1,626,000	6,504,000	
114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180,000	1,036,000	4,14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40,000	1,728,000	6,912,000	
	선택3	거실 + 주방+ 안방 + 침실1 + 침실2		5	8,130,000	1,626,000	6,504,000	
116A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180,000	1,036,000	4,14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40,000	1,728,000	6,912,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	8,130,000	1,626,000	6,504,000
116B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180,000	1,036,000	4,14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40,000	1,728,000	6,912,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	8,130,000	1,626,000	6,504,000
105T	선택1	거실 (2EA) + 안방	삼성전자	3	5,020,000	1,004,000	4,016,000
	선택2	거실 (2EA)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510,000	1,702,000	6,808,000
111T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180,000	1,036,000	4,14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40,000	1,728,000	6,912,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	8,130,000	1,626,000	6,504,000
118T	선택1	거실 (2EA) + 안방	삼성전자	3	5,100,000	1,020,000	4,080,000
	선택2	거실 (2EA)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8,650,000	1,730,000	6,920,000
130T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삼성전자	3	5,230,000	1,046,000	4,184,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6	9,140,000	1,828,000	7,312,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5	8,300,000	1,660,000	6,640,000

■ 추가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 20%	잔금 80%	비고	
			계약시	잔금납부시		
105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19,990,000	3,998,000	15,992,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드레스룸 옵션	국산 드레스룸 시스템장 옵션	4,300,000	860,000	3,440,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470,000	294,000	1,176,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중문	알파룸 중문 설치	1,230,000	246,000	984,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1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0,620,000	4,124,000	16,496,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2,530,000	6,506,000	26,024,000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8,740,000	1,748,000	6,992,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590,000	318,000	1,272,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4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0,620,000	4,124,000	16,496,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2,530,000	6,506,000	26,024,000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8,740,000	1,748,000	6,992,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590,000	318,000	1,272,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6A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0,620,000	4,124,000	16,496,000	해당옵션 선택 시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2,530,000	6,506,000	26,024,000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해당옵션 선택 시 국산가구 옵션 선택불가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8,740,000	1,748,000	6,992,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590,000	318,000	1,272,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6B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0,620,000	4,124,000	16,496,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2,530,000	6,506,000	26,024,000	해당옵션 선택 시 국산가구 옵션 선택불가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8,740,000	1,748,000	6,992,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590,000	318,000	1,272,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05T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19,990,000	3,998,000	15,992,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드레스룸 옵션	국산 드레스룸 시스템장 옵션	4,300,000	860,000	3,440,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470,000	294,000	1,176,000	
	중문	현관중문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중문	알파룸 중문 설치	1,230,000	246,000	984,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1T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0,620,000	4,124,000	16,496,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2,530,000	6,506,000	26,024,000	해당옵션 선택 시 국산가구 옵션 선택불가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8,740,000	1,748,000	6,992,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590,000	318,000	1,272,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18T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19,990,000	3,998,000	15,992,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드레스룸 옵션	국산 드레스룸 시스템장 옵션	5,230,000	1,046,000	4,184,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620,000	324,000	1,296,000	
	중문	현관중문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중문	알파룸 중문 설치	1,230,000	246,000	984,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130T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독립형후드 + 하이브리드 쿡탑 + 수전 + 싱크볼 + 주방상판 벽체	23,760,000	4,752,000	19,008,000	해당옵션 선택 시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 불가
	외산가구 옵션	주방가구 기본형 + 드레스룸 고급 시스템장 옵션	33,170,000	6,634,000	26,536,000	해당옵션 선택 시 국산가구 옵션 선택불가
	국산가구 옵션	주방 + 드레스룸 강화 옵션	9,760,000	1,952,000	7,808,000	

	폴리싱 타일	거실 + 주방바닥 → 폴리싱타일	1,810,000	362,000	1,448,000
	중문	현관 중문 설치	1,290,000	258,000	1,032,000
	TBI 냉장고	LG S711TK24B(국산) / S711SI24B(외산)	6,100,000	1,220,000	4,880,000
	TBI 김치냉장고	LG / K221PR14B	1,450,000	290,000	1,160,000
	하이브리드 쿡탑	Sk 매직 / ERA-BT030 (하이라이트1구 + 인덕션2구)	800,000	160,000	640,000
	의류관리기	LG / S3DFB	1,300,000	260,000	1,040,000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함.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규정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 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 (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선택 옵션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계약금 및 잔금	KEB 하나은행	153-910013-63904	아시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금 및 잔금	KEB 하나은행	153-910013-63904	아시아신탁(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바람.
- 잔금 약정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 납부: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 수납불가)
(예시 101동 5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5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비(유상옵션)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 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품목 및 적용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바닥재	<강마루>거실, 주방, 식당,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 <타일, 강화대리석>현관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디자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먼처리 천장 :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홈네트워크 월패드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강화대리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바닥난방,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	주방TV, 주방가구, 팬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벽판넬, 주방수전, 싱크볼, 시스템 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절수패달	설비배관, 전기, 통신, 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 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장, 현관방화문, 디지털도어락, 대피공간 방화문, 실외기실 도어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불박이장, 세탁실, 발코니수전, 세탁선반(장)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창호	목창호(가틀 제외), 실외기실 도어 (다용도실과 실외기실 사이 미서기문)	목창호 가틀, 내부 분할 플라스틱 창호(래핑지 제외), 현관 방화문, 대피공간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105	111	114	116A	116B	105T	111T	118T	130T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	32,832,000	34,709,000	35,830,000	35,881,000	37,739,000	32,832,000	35,788,000	36,555,000	41,083,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85㎡ 초과하는 주택형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기타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추가 선택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
-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체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하며,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호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1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외부운동시설 2개소 등), 근린생활시설 등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 감리
회 사 명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감 리 금 액	1,686,465,000	411,275,754	75,900,000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1항 및 4항 적용).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 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등에 대기전력 차단장치 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 세대 내 1개소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구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거실, 침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른 절수형 수도설비설치

건축	공동가설공사	3,003,629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1,595,635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23,088,397
	용접공사	
	조적공사	1,395,588
	미장공사	1,287,262
	단열공사	929,311
	방수·방습공사	921,167
	목공사	1,594,607
	가구공사	1,821,381
	금속공사	2,072,428
	지붕 및 환통공사	
	창호공사	2,754,803
	유리공사	864,237

	그 밖의 공사비	승강기공사	3,349,495
		그 밖의 공종 계	817,585
계	계	일반 관리비	9,780,049
		이윤	4,183,340
간접비	계	그 밖의 공사비 계	4,010,887
		계	8,194,228
그 밖의 비용	합 계	설계비	80,217,745
		감리비	1,334,300
합 계	합 계	일반분양시설 경비	2,173,641
		분담금 및 부담금	13,293,267
합 계	합 계	보상비	549,275
		기타 사업비성 경비	-
합 계	합 계	계	59,478,465
		계	76,828,948
합 계	합 계	그 밖의 비용	46,585,913
		합 계	448,111,677

※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단위 : 원)

보증 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삼천오백팔십사억사천오십육만원정 (358,440,560,000)	제01282019-101-00044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계속사업·계속사업의 정의,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법 제21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 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IX. 유의 사항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분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2018.12.11.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사실을 신고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 가능함.
-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유효높이는 최대 2.7m로 1Ton미만의 택배차 진입은 가능하나 대형화물차,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함. (지하주차장 및 2층주차장의 주행유효높이는 2.3m)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는 105, 111T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TOP LIGHT, 쓰레기분리수거장, 재활용생활폐기물 보관장고,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업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 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옥탑부 디자인, 주동/창호형태, 벽체마감, 저층부 시공 디테일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 일조, 조망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분양 공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 계획(변경)승인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엠블럼 설치 위치 및 개소,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입면계획, 차수판,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주택법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외벽 돌출 물품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허가를 진행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일 타입이더라도 동 조합에 따라 일부 서비스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역난방 공급 대상지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난방설비를 공급하여 공동주택은 별도의 개별보일러를 설치 할 수 없음.**
- **101동, 106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915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지하주차장 911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4대)**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 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단지 진출입구 등의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채시, 부동산증개 등)는 당사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산지, 운동시설, 부지 고저차 등 주위 환경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이형평형의 경우 계약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평면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시 선택한 각종 유상옵션 및 무상옵션은 취소 및 변경, 추가신청이 불가함**
- **견본주택에 미전시된 이형평형의 마감재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옥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대피공간에는 대피활동에 방해가 되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 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함.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공동장소인 광장,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각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완충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17.01.20. 시행)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신탁사업

- “본 사업”은 위탁자겸 수익자 (주) 에스퍼블유산업개발과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서상 매도인(시행사) 지위가 아시아 신탁(주)로부터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 에스퍼블유산업개발(또는 수익자 변경시 변경된 수익자)에게 포괄면책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함
- 하자보수의 책임은 위탁자 (주) 에스퍼블유산업개발 및 시공사인 계통건설산업(주)가 부담하며, 아시아신탁(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분양수입금 납부계좌로 분양금이 납부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함
- 분양대금이 본건 사업을 위한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의 해지, 신탁 목적의 달성 (본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완료) 등으로 신탁이 종료될 경우 아시아신탁(주)의 매도인으로서의 계약상 지위 일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의무를 포함함)는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주) 에스퍼블유 산업개발에 포괄적으로 이전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관련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학교 관련 사항

- 초중학교 배정은 향후 교육지원청 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님.
- 서울시는 평준화지역으로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서울시 교육청 정책에 따라 진행함.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관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음.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설 예정 학교 위치 및 개교 시기의 미정으로 원거리 통학이 예상되며, 향후 학교 설립 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개교전 까지 송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통학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 임.

■ 단지 주변 혐오시설 공지

- 단지 남측 300M 내외 열병합발전소(전기/열공급시설)가 위치하여 단지 내에서 시설물이 보일 수 있으며, 겨울철 굴뚝에서 발생하는 하얀 수증기로 일부 세대의 일조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유의사항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돌쌓기벽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완충녹지는 설치 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레벨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당 사업지와의 단차가 확정되는 사항으로, 분양시에 참고용으로 제작된 CG와 모형과는 상이하게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면하여 설치되는 토목옹벽의 경우,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등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장지천변 공원, 도로, 완충녹지, 업무시설, 복지시설, 근생시설, 인접 단지(A1-5블록, A1-4블록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완충 녹지에 면하여 계획된 단지 내 산책로는 완충녹지 조성 레벨에 따라 산책로 옆에 석축,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경사도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완충녹지, 인접대지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경계와 관련하여 남측수변공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시공 예정으로, 단지경계부 외부에 미세먼지 방지용 교목(H=5m내외)식재가 계획되어 있음. 이에 단지경계에 대하여 분양시 참고용으로 제작된 CG와 모형과 상이하게 조성될 수 있으며 104동~107동 저층부에서 장지천변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남측 수변공원측 경계부 단지내에 옹벽/사면/자연석쌓기(H=2.5m미만) 등으로 해당구간의 시공계획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수변공원과 연결되는 남측 외부출입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시공계획 및 택지여건, 수변공원 조성 여건에 따라 시공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할 경우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부와 관련하여 남측수변공원, 장지천 저류지, 동측 완충녹지, 서측 트램예정지 주변 공원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시공 예정으로, 해당구간의 시공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이에 단지외부에 대하여 분양시 참고용으로 제작된 CG와 모형과 상이하게 조성될 수 있음.
- 주변 골프장 인접세대에서는 골프공 비산 및 소음, 빛 등의 환경 피해 등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진입램프에 인접해 있는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차량 소음 및 진동, 매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빛 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주차입구 인근의 101, 108동의 경우 동 사이에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진입구(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해당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01동, 106동 인근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는 105, 106, 107동, 인근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101, 102동 인근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과 유아놀이터가 인접해 있는 101, 102동 인근 세대는 소음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 1층에는 어린이집과 맘스스테이션이 설치됨.
- 102동 1층에는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이 설치됨.
- 105동 지하1층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됨.
- 106동 지하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됨.
- 107동 1층에는 주민카페가 설치됨.
- 106, 107동 사이 지하1층에는 북카페가 설치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대수는 915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지하주차장 911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4대)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 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홍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됨.(주차장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카탈로그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중 소방서 지시에 따라 비상차량동선 선형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건물 외벽 디자인(요철계획, 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세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건물 외벽 엠블럼 및 풍요기 등의 사인물 설치는 실시공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됨.
- 단지 출입구의 문주설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로 및 소방사다리차 작업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지하,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음.

- 급배기시설, Top Light(천창), DA(환기구)등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완충녹지, 인접대지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세대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람.
- 조경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 주변 도로 및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 계획 및 기둥 위치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시설의 외벽 및 옹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일부에는 부대시설용 실외기실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은 지하1층에 계획되어 있음.**
- **지하 2층 주차장 유효 층고는 약2.3M로 트럭 등 높이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주출입구 인근 일부 구간에 한 해 일부 영역을 이용해야 함.**
- 단지내 비상차량(택배차량, 재활용품 수거차량 포함)에 의한 보행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모델하우스에 표현된 경관조명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것으로 특화디자인 및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고, 동별로 계획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시공시 경관조명사양, 설치위치, 설치방법 및 수량 등이 모형과는 상이 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 연결을 위한 경사로, 계단, E/V, 지하층 DA 등에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에는 프라이버시 및 소음, 조망, 일조 등이 불리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 및 재활용분리수거장, 휴게공간, 외부 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레벨차이에 의한 주민 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및 주차장 접근의 형평성이 각 주동마다 다를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동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전면에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물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편의성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조정,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등, 단지 내 레벨차에 따른 데크 계획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본공사시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단지외관, 조경시설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동별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주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사이즈는 주동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주동의 계단실은 직통계단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코아 형태 및 주동 형태에 따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의 창호폭은 상이하게 계획되어 있음.**
- 각 주동의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의 문주의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관련기관 협의에 따라 단지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소음 진동, 냄새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시설물 계획, 레벨,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 및 법면의 경우 형태 및 구간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레벨차로 인해 주·부출입구로부터 각 주동 주출입구까지의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음.**
- 각 주동의 공용부 홀 ,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함.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7등급 임."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관, 주차램프, 외부계단, 문주 등의 설치 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피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의해 단지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므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거나 세대와 인접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단지 진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입을수 있음.
- 각 동 최상층과 승강기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 층의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워싱턴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한전 인입 장비 및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 경계에 설치 예정이나,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유의사항

-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주동의 위치, 향, 조망이 모두 상이하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인접 세대와의 조합방식에 따라 일부 서비스면적은 상이할 수 있으나, 공공면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임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가구 계획의 경우, 최종 사업승인도면과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하여 적용함.
- 발코니 확장 옵션 및 평면 가변형의 경우,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음.
- 제시된 선택형을 적용시, 전기/설비의 배관, 배선 방식 및 품질을 고려하여 세대 내 일부 벽체의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됨.
- 각 실별 발코니 비확장형 및 확장형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내부 및 일부 공간에 설치되는 콘서트 디자인, 사양은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 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공사 및 하자 보수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등은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카탈로그등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연자재 및 인공석재, 무늬목 시트류, 강마루 등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음.
- 테라스와 노출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에 한하여 바닥배수구 및 선홍통이 설치되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싱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욕실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되며 위치와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장치 (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로 인해 환기장치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냉매배관은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별도의 냉매배관 및 별도전원 콘센트는 설치하지 않음.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각 동 측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각 세대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음.
- 평형별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크기 및 디자인은 주동 조합 평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열성능 확보를 위해 출입문의 유효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일부 세대의 창호 및 난간 사이즈는 추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에는 벽 및 천정의 마감재(도배, 타일 등)와 바닥마감재(마루, 타일 등)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하부에는 페인트로 마감됨.
- 거실 확장 선택시 상부세대가 비확장인 경우 천장부위 단열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상부 비확장 선택 세대의 발코니 레벨은 추가 단열재 설치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세대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으며, 하부확장 세대의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축소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콘크리트난간 높이 및 난간대의 재질은 동별, 층별,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람,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및 난간, 실외기 그릴창의 형태 및 개폐방식, 손잡이 형태, 분할, 재료, 색상, 제조사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창호는 시공사OEM 제품으로 창호 및 유리 브랜드와 핸들, 하드웨어류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PL창호 중 외부측 창호의 외부 색상은 회색계통으로 제작/설치 예정임.
- 발코니난간대 색상은 회색계통으로 제작/설치 예정임.
- 아파트의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에 따라 창호형태, 재질, 분할, 프레임사이즈, 유리사양, 창호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모델하우스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임.

- 저층부 석재마감 세대의 경우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마감 중 석재마감 부위는 천연석으로 시공되며 천연석의 특성상 약간의 색상차이 또는 특정무늬가 발생할 수 있음
- 105, 106동 외부노출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홍통은 노출되어 시공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홍통은 노출되어 시공됨.
- 모델하우스에 사용된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 등은 품귀, 품질, 제조사 도산등의 부득이한 경우, 실시공시 및 하자보수시 동등, 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현관문 및 세대 철재도아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구, 가전류 등 유상옵선 품목은 계약시 모델하우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각실 발코니 비확장 및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방향 등이 상이할수 있음.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발코니 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TV 등) 설치공간의 크기는 모델하우스 및 사업승인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음.
- 세대 내 우물천정 높이는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정과 및 길이/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신발장 내 분전반이 설치되는 경우, 전면의 선반 설치는 분전반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선반 배치는 지양하기 바람.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 천장형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선으로 제공됨. 전시된 제품의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되오니 옵션계약시 확인바람.
- 같은 평형대의 세대일지라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세대간벽의 두께,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분전반, 세대통합단자함은 현관 신발장, 창고, 팬트리, 기타 내부에 일부 공간을 차지하여 설치예정이며, 위치는 견본주택 내 표시 위치와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다용도실 및 현관은 비난방 구간으로 생활습관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 및 환기장치의 가동, 적정온도 및 습도 관리가 필요함
- 다용도실 내 전열교환기 및 에어컨 냉매배관 가림을 위한 천정마감 예정임.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테라스세대 테라스 내 세대간 벽체의 마감자재,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세대 테라스 난간대의 재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테라스세대 테라스 외부 조명의 형태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105, 106동 테라스세대 테라스 바닥(페데스탈)으로 3~10층의 116B타입세대 외부발코니 우수 및 2층 테라스세대 우수가 배출되므로 타세대 우수배출 차단을 요구할 수 없음.
- 1,2층 테라스세대 테라스 난간대에 피난대피용 접이식사다리와 완강기가 설치됨.
- 3~10층 대피공간에 피난대피용 완강기가 설치됨.
- 세대욕실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대피공간에는 대피활동에 방해가 되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시행 및 시공사

구 분	회 사 명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시행사	아시아신탁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110111-2937831
위탁사	(주)에스띠블유산업개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봉명동, 제 1608호)	170111-0297821
시공사	계룡건설산업(주)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 (탄방동)	160111-000312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25

■ 홈페이지: <http://richeville-wiryee.co.kr>

■ 문의전화: 02-6447-0001